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14~14p 15~18줄 번호 : 6	문제-본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동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정답 및 해설편 115~115p 32~34줄 번호 : 13	문제-본문	라. (○)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대법원 2006. 0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라.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체결권 이외에도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가지지만,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TIP]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대법원 2006. 0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정답 및 해설편 222~222p 10~11줄 번호 : 29	해설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성립 이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최초보험료 지급여부는 상관없다. 즉 최초보험료 지급이 없어도 책임을 개시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상관없다. (이하 정오표상 생략)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성립 이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며 최초보험료의 납입을 보험자의 책임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단, 최초보험료 지급이 없어도 책임을 개시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상관없다. (이하 정오표상 생략)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